

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공문을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3. 5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



- 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 공시송달
- 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(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), 제28조(반환명령), 행정절차법 제14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박○복	54.05.20	강원도 태백시 서황지로 99	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	-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법률 제27조, 제28조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, 반환명령 등	○ 국민취업지원제도 3회차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으로 기지급액(500,000원) 반환명령 및 수급기간 수급권 소멸 ○ 취업지원 종료 ○ 처분일로부터 5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

- 4. 공고기간 : 2024. 3. 5. ~ 2024. 3. 19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태백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김길자(☎ 033-550-868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